라이나생명

A Chubb Company

장기요양등급 변경적용 특약

약관

목차

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효력】 3
제 2 조 【장기요양등급의 적용】 3
제 3 조 【계약자 등에 대한 안내】 3
제 4 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3
제 5 조 【준용규정】 3

장기요양등급 변경적용 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포함하는 (무)THE든든한시니어간병보험(갱신형) 주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2조【장기요양등급의 적용】

주계약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의 정의는 주계약의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이 특별약관 적용전	이 특별약관 적용후
세부 내용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의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자 등에 대한 안내】

회사는 주계약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장기요양등급 변경적용 특약의 내용을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2조(장기요양등급의 적용)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라 합니다)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2조(장기요양등급의 적용)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알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주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